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그 의의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김성원 사무관

## I. 들어가며

새 천년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될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 6개월이라는 산고 끝에 2001년 2월 3일 공포되었다.

우리 산업은 그간 조립·완성품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핵심 부품·소재를 해외공급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서 산업구조

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의 달성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범국가적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품·소재는 높은 수입의존도, 만성적인 무역역조, 핵심 부품·소재의 대일의존 현상이 심화되어 나라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산업환경하에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우리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고 모든 산업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 II.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의 제정추진 배경 및 의의

최근의 세계경제는 디지털화의 급속한 전개로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되면서 부품·소재가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기술혁신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IT혁명을 토대로 부품·소재의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이 보편화 되면서 산업환경이 기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가 향후 부품·소재업계의 생존 뿐만 아니라 조립·완제품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정부 주도의 육성시스템과 달리 시장친화적 시스템(market-friendly system)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술개발의 경

<부품·소재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

구분	88~97	98	99	2000(잠정)
전체 무역수지 (부품·소재·기계류)	△569 (△977)	390 (160)	239 (118)	121 (99)
대일무역수지 (부품·소재·기계류)	△952 (△1,212)	△46 (△70)	△83 (△108)	△115 (△145)

### < 과거 시책과의 차이 >

• 수입대체 위주	⇒	• 글로벌 공급 위주
• 조립기업 중심	⇒	• 부품·소재기업 중심
• 분산·배분 지원방식	⇒	• 선택적 집중 지원방식
• 사업화 지원(융자)	⇒	• 원천기술개발 지원(출연)
• 국내기업 육성 중심	⇒	• 국내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유치 병행

우에도 시장친화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투자기관으로 각각 구성된 “부품·소재통합연구단”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선정·관리하며, 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술성과 함께 시장성·기업견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된 기술개발지원시스템이다. 이외에 특별조치법의 주요한 특징을 과거시책과의 차이로 구별하여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주식취득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공공기금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으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의 자금유입기반을 대폭 확충하였다.

둘째, 통합연구단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종합기술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통합연구단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융합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들의 통합운영체제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지원요청에 따라 연구원 파견, 연구시설·장비·기술정보의 지원, 기술지도 및 자문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보유한 소규모 기술역량의 결집(Critical Mass)을 촉진하기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설립·육성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즉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전담조직(부설연구기관 포함) 분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기

술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테크노파크 입주시 우대, 병역특례요원 우대지원, 통합연구단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고급기술인력 유입 촉진이다.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직·겸임을 허용하고 통합연구단 소속연구원의 부품·소재전문기업 파견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및 산업단지에 소재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대학 등이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부품·소재정보의 유통촉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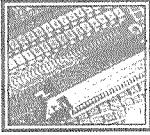
주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정보의 효율적·체계적 활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축적,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제공 등이 부품·소재정보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이상의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시책과 함께 특별법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중요한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즉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 III.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투자전문기관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원천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기업의 핵심 부품·소재개발 의욕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서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은행·전문투자기관들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성과 재무건전성을 심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에서 선택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R&D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품·소재산업의 애로로서 여전히 개발된 제품의 공용화·표준화가 지적되고 있고, 사실 부품·소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의 공용화와 표준화가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한 시책을 담고 있는데 부품·소재 공용화를 위하여 부품·소재의 공용화 지정 요청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제표준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개발된 부품·소재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동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품·소재산업의 특수성으로 개발되고 생산된 부품·소재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판매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동 법에서는 이러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의 애로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이란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시설·평가기준·평가전문인력 등 신뢰

### 부품·소재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 통합 연구 단

공공연구기관(현재 15개)

구성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능 핵심 부품·소재 개발과제 도출·공고  
기업의 기술성 평가 및 인력지원

3. 시장성·  
재무건전성  
검토의뢰

구성 전문투자기관, 한중, 산은, 기은 등  
(현재 51개 기관)  
기능 시장성·재무건전성 심사 및 투자

1. 기술개발 대상품목 공고

2. 기술개발 사업계획 신청

부품·소재 전문기업

4. 연구인력지원  
4. 정부 기술개발  
자금지원

4. 투자 지원

기술개발 Task Force

(부품·소재전문기업 주도, 연구단·투자기관 지원)

국산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 부품·소재별 신뢰성 평가센터 설치
- 신뢰성의 평가·인증 및 신뢰성 보험 실시

성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성 인증제도” 및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된 부품·소재를 수요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IV.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품·소재산업의 기대 효과

현재와 같은 국경없는 무한경쟁(borderless mega-competition)에서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역량의 결집을 통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생산요소의 유입이 원활해지고 정부보유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족한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으로 부품·소재분야의 기술 융

합화 현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투자기관협의회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민간의 자본이 기술력 있는 유망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유입되어 한정된 국가 R&D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하게 된다.

셋째, 기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범국가적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만들어 놓고도 외면 당하는 우수 기술과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의욕과 성과를 고취시킬 것이다.

넷째, Global Sourcing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우량 부품·소재 전문 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독자기술력의 취약으로 인한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시정하여 부품·소재 전문 중견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은 그간 부품·소재 국산화시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추된 대 국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기업의 핵심기술개발→수

출 산업화→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여 한국산업의 선순환(virtuous circle)구조를 정착시키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다.

#### V. 마치며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조직의 정착

흔히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약점을 “허리(미드필드)가 약하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도 바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부품·소재산업은 축구의 미드필드와 같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자 기초에 해당한다. 축구의 공격이 미드필드에서 시작되듯이 우리 산업의 모든 경쟁력도 바로 부품·소재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이내에 고부가 가치 첨단 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global supply center)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